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1. 주철현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9. 12.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전체회의(2024.1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주철현의원)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존의 획일적 취급 기조 대신에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이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8조).
-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44조).
- 다.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365조제2항).
- 라. 장물죄를 변경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 또한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함(안 제151조제2항, 155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친족상도례의 내용을 포함한 현행 형법이 1953. 09. 18.에 제정된 이후 70년이 넘으면서 산업화 및 도시화는 우리 친족과 가족 문화에 상

당한 변화를 이끌었음. 호주제의 폐지,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제도 및 구조가 과거와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기만 하면 “필요적 형면제”의 법적효과를 부여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게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됨.

(1) 법적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친고죄로 개정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게 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할 경우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수사 또는 소송을 진행·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국가형벌권을 보다 빠르게 개입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사항으로 보임.

(2) 장물범과 본범 간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형을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조항의 법적효과도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제365조제1항(장물범과 피해자간 친족관계)과 달리 제2항(장물범과 본범간 친족관계)의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규정한 취지는 본범의 친족이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거나, 본범과 협력하여 장

물을 운반 또는 알선하는 것은 친족간의 인정에 비추어 동정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친족상도례와 다른 특수성을 띄는 점, 개정안은 제365조제2항과 유사한 취지에서 규정된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의 법적효과도 임의적 감면으로 함께 개정하여 체계상의 균형을 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의 적용 배제규정을 두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